

III

학사제도

1. 학점 및 성적

가. 학점 인정기준

- 1) 학점은 한 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인정함
- 2) 실험실습, 실기, 체육 기타 학칙이 정하는 특별한 교과목은 한 학기에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3) 국내·외 학점교류 프로그램 학점인정
 - 가) 국내·외 타 대학과의 교육교류제도에 의하여 이수한 교과목은 본교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
 - 나)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우리대학 개설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은 해당 과목으로 인정하며, 우리대학 개설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는 과목은 자유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.
 - 다) 나) 사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18학점 이내에서 하나의 교과목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- 4) 다음의 교과목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고 평점평균에는 삽입하지 않는다.
 - 가) 봉사활동
 - 나) 기타 따로 정하는 교과목(Pass 처리 교과목 등)

나. 시험

- 1) 매 학기 학사일정에 따라 수시시험 및 기말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
- 2) 수험자격 부여 대상: 강좌 별로 총 수업 시간의 2/3 이상을 출석한 자
- 3) 수시고사는 학기 중 수시로 성적을 평가하며 레포트, 과제물, 기타 평가방법 등으로 할 수 있음
- 4) 기말시험은 필기고사, 실기고사, 필기와 실기를 조합한 평가 중 택일하여 평가할 수 있음
- 5) 추가시험
 - 가) 학칙시행세칙 제16조(출석인정)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
「학칙시행세칙」 제16조(출석인정)

3. 본인의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거나,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학기중 3회 이상의 정기적인 병원 진료를 받아 출석할 수 없는 경우
4.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사망한 경우

- 나)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자는 시험 시행 전 또는 해당 시험 종료 후 3일 이내에 학생포털웹서비스(inSTAR)에 출석인정요청을 신청하고, '시험 결시 신청서'를 작성하여 담당교수의 허가를 받아 증빙서류를 단과대학 행정지원실(학과 조교)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다) 단, 추가시험에 의한 성적은 B+이상을 인정할 수 없다.

6) 조기시험

- 가) 신청 대상자: 기말시험을 시험 기간 내에 치르지 못하는자(예-군입대, 개인 신병 사유 발생 등)
- 나) 지원자격: 수시시험을 마친 뒤, 수업일수 2/3이상을 출석한 자로서 기말시험 시행 전 신청한자
- 다) 신청방법: 조기시험신청서(증빙서류 첨부)를 단과대학 행정실(학과 조교)에 제출 후, 학사지원실 공문 접수
- 라) 신청기한: 조기시험 사유 발생(군입대 등) 예정일 2주일 전까지
- 마) 성적부여: 조기시험 응시 후, 해당 학기 성적 부여 됨(성적 확인 기간에 성적 확인 가능함)

7) 부정행위의 처벌

- 가) 사전 계획 없이 순간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목에 한하여 무효 처리함
- 나) 사전에 부정행위 자료를 작성하였거나 책상, 벽, 기타 보이는 곳에 자료를 기록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부정행위를 한 당일에 치른 전 교과목을 무효 처리함
- 다)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, 해당 학기 전 교과목을 무효(성적 0점) 처리하며 무기정학에 처함
 - 본인 시험 교과목을 다른 본교생을 통해 대리 응시케 한 경우
 - 시험 교과목 답안지를 다른 재학생과 교환하였거나 외부로부터 반입한 경우
- 라) 타교 재학생을 본교 대리시험에 응시케 한 자는 제적처리 함

다. 학업성적 평가

- 1)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(단, 총장이 교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경우 절대평가 할 수 있음)
- 2) 상대평가 비율 안내(교과목 특성에 따름)

| 교과목 구분 | | 상대평가비율 |
|---|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일반교과 | 교양 | A ≤ 30%, A+B ≤ 70% |
| | 전공 | A ≤ 30%, A+B ≤ 65% |
| 교직 교과목, 실험실습실기 교과목, 수강인원 20명 미만 강좌 | | A ≤ 40% |
| 수준별 학습 교양필수 강좌(고급), 외국어로 강의하는 강좌(교양 외국어 제외) | | A ≤ 50% |
| 개인 레슨형 전공실기, 개인(팀) 프로젝트, 기독교적인 적성, 사회봉사, 시민공동체, 현장실습 및 Capstone Design 유형 교과목, 5명 미만 강좌 | | 절대평가 |

- 3) 성적평가 기준은 학칙에 근거하여 수시시험, 기말시험, 과제물, 출석상황, 학습태도 등을 반영하여 부여 함
 - ※ 교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1/3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성적을 낙제(F)로 처리함
 - ※ 출결점수 산출 방법: 각 2회인 경우 결석 1회에 준하여 처리(전자출결시스템 출결사항 자동반영)
- 4) 지역대학연합대학(RUCK), 원광대, 전북권역 원격교육지원사업(전북대) 등 학점교류 원격강좌의 경우 각 대학의 성적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
 - ※ 단, 타 대학 학사 운영 방식 변경에 따라 최종 성적은 학기 초 수업계획서의 항목별 비율과는 다르게 변경되어 반영될 수 있음(우리 대학은 타 대학에서 송부된 성적부 그대로 입력 예정)
 - ※ 각 대학별 학업성적 평가등급 구간이 상이하므로 최종 성적은 총점을 기준으로 입력함(타 대학 성적 백분위점수와 전주대 성적 백분위점수는 동일하나 성적 등급은 대학 간 상이할 수 있음)
- 5) 학업성적 평가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| 백분위 점수 | 등급 | 평점 | 백분위 점수 | 등급 | 평점 |
|----------|----|-----|---------|----|-----|
| 95 ~ 100 | A+ | 4.5 | 70 ~ 74 | C | 2.0 |
| 90 ~ 94 | A | 4.0 | 65 ~ 69 | D+ | 1.5 |
| 85 ~ 89 | B+ | 3.5 | 60 ~ 64 | D | 1.0 |
| 80 ~ 84 | B | 3.0 | 0 ~ 59 | F | 0.0 |
| 75 ~ 79 | C+ | 2.5 | | | |

* 평점 평균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교과목의 경우 성적 표기는 취득을 P, 미취득을 NP로 함.

6) 성적 산출방법

- 가) 평균점수 산출방법: $\Sigma(\text{과목별 취득점수} \times \text{학점}) \div \text{총 신청학점}$
- 나) 평점평균 산출방법: $\Sigma(\text{과목별 취득평점} \times \text{학점}) \div \text{총 신청학점}$

III. 학사제도



7) 석차 산출방법

- 가) 학기석차: 학과(부)별 동일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학기에 이수한 교과목의 평점평균 점수에 의해 산출
 나) 전체석차: 학과(부)별 동일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절수업 성적을 포함한 전체 이수 교과목의 평균점수에 의하여 산출함. (단, 학부 소속 4학년 학생일 경우 전공별로 전체 등수를 산정함)

8) 성적 이의(정정) 신청(학생평가규정 제6조-성적부여 절차)

- 가) 신청기한: 성적 공시일로부터 7일 이내
 나) 신청방법: 학생포털웹서비스(inSTAR)을 통하여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해당 과목 성적 이의 신청 접수
 다) 처리결과: 담당교원 성적정정의 분명한 사유가 있을 때, 성적확인 기간 내 성적을 정정 처리
 라) 성적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상대평가 비율을 준수하여야 함

9) 학사경고

- 가) 매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.5미만인 자는 학사경고 처분함

나)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이내로 제한됨

* 단,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학습법 컨설팅 교육을 이수하고, 지도교수의 상담을 받은 경우에는 18학점으로 함(2019-2학기부터 적용)

- 다) 재학기간 중 연속하여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처리 함

* 단,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학습법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4회로 함

- 라) 재입학 학생에 대한 학사경고 제적은 재입학 이후의 성적부터 적용함

* 다), 라)의 경우 2016학년도부터 적용(ex. 2017-2, 2018-1, 2018-2학기를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2018학년도 2학기에 학사경고 제적처리 됨)

라. 출석인정(학칙 시행세칙 제16조)

1) 출석인정 사유 및 신청자격, 신청기한, 제출서류

| 호 | 출석인정사유 | 신청 자격 및 인정기간 | 신청기한 | 제출서류 | 비 고 |
|-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호 | 교육과정운영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현장실습, 현장전학 | 현장전학 또는 현장실습 학과 소속 학생 | 결석시작일 전 1주일 내 | 주관 학과 공문 | - 교내축제, 교내 체육대회, 수학 여행, 졸업여행, MT 등에 참가하 는 경우 비대상 - 학과에서 출전 하는 공모전(대 회)은 비대상 |
| | 국고사업의 공식행사 | 사업단에서 주최한 행사 참여한 자 | 〃 | 주관 사업단 공문 | |
| | 학교대표로 대회 참가 | 학교 운동선수 또는 총장 결재를 받은 학교 대표 | 〃 | 관련 증빙서류 | |
| | 홍보대사 학교행사 지원 | 홍보대사 | 〃 | 관련 증빙서류 | |
| 2호 |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소집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| 예비군 훈련 참여, 군입대 시험 응시 등 | 결석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| 예비군 훈련 확인증 또는 군입대 시험 응시 확인증 | 재판으로 인한 법원 출석은 비대상 |
| 3호 | 본인의 상해나 질병 | 병원에 입원한 자,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학기중 3회 이상의 정기적인 병원 진료를 받은 자 | 〃 | 입퇴원확인서, 진단서, 의사소견서 등 관련 증빙서류 | 진료예시) 대학병 원 등의 진료로 진료일정을 환자 가 변경할 수 없 는 경우에 해당하 는 상해나 질병 |
| 4호 |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사망한 경우 | (의)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(공유일 포함 5일), 형제자매(공휴일 포함 3일) | 〃 | 사망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| 가족관계증명서 없을 시 무효 |

| 호 | 출석인정사유 | 신청 자격 및 인정기간 | 신청기한 | 제출서류 | 비 고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5호 | 마지막 학기에 등록한 졸업예정자가 취업 한 경우(채용연계형 인턴 포함, 정부지원사업 훈련연계형 인턴(3개월 이상)) | 취업자 (기간 제한 없음) | 취업일로부터 2주 이내 | 재직증명서, 4대사회보험 가입증명서 | 방학 중 취업자는 개강 후 2주 이내 제출 |
| 6호 | 체육 및 비체육 특기자가 대회출전 및 훈련하는 경우 | 체육 및 비체육 특기자 (수업일수의 1/2 이내) | 결석시작일 전 1주일 내 | 관련 증빙서류 | |
| 7호 | 생리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 (보건공결) | 여학생, 매월 1회만 인정 | 결석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| 제출서류 없음 | 시험기간 제외, 전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신청 불가 |
| 8호 | 학생 본인 및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| 본인 5일, 자녀 3일 | 결석시작일 전 1주일 내 | 청첩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| |
| 9호 | 그 밖에 총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| - | - | | - |
| 10 호 | 학생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| 본인 21일, 배우자 7일 | 결석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|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| |
| 11 호 | 법정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| 법정전염병(코로나19 등)의 확진자, 자가격리자 | 〃 |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등 증명서류 | |

2) 신청방법

- 학생포털웹서비스(inSTAR)에 출석인정 신청 입력 후, 출석인정신청서(담당교수 서명 필) 및 증빙서류 단과대학(학과사무실) 제출
- 2개 이상 단과대학 학생참가 행사의 경우: 행사주관부서가 행사계획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
- 기말고사 시작일 이후 신청은 불가함

3) 출석인정 기간

- 출석인정 사유를 모두 합하여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만 출석 인정이 가능함(단, 5호(취업)의 경우 기간 제한 없으며, 6호(특기자 출전 및 훈련)의 경우 수업일수 2분의 1까지 가능
(예) 주 1회 수업(15회수업)의 경우 보건공결 2회 사용 후 현장실습으로 4회 공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
→ 수업일수 1/3이내(총5회)까지만 가능)

4) 출석인정 및 성적 처리 관련 유의사항

- 원격수업(xClass, iClass, iClass+, 블렌디드러닝 제외)은 출석인정 대상 과목이 아니므로 학생이 수강하여야 함(공결처리 되지 않음)
- 출석인정은 수업의 출석에 관한 사항을 인정하는 것이며, 성적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수의 평가기준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수의 기준에 따라야 함